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 고객이 연금 해지 시 보증부대출 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보증채무이행 근거 마련
- (개인)회생·파산 진행 시 지급정지사유에 추가됨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 청구사유로 운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 주택연금 해지 시 보증부대출 잔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금융기관에 담보주택 가격만큼 상환하고, 차액분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이행
- 주택연금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파산면책 진행 시, 주택연금 대출계약이 유지 불가하여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로 추가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5년 12월 14일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문해인 차장(1684@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13
- 팩스번호 : 0505-036-0768

붙임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끝.

현행	개정안
제3장 보증채무이행 제13절 채무의 조정 제15조(이행청구사유)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는 「공사법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같다. 이때 제7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3장 보증채무이행 제13절 채무의 조정 제15조(이행청구사유) ①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는 「공사법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같다. 이때 제7호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u>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해지 시 보증부대출 잔액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u> <u>5. 피보증인이 보증부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계획(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u> <u>6. 피보증인이 보증부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가 폐지 또는 종결되거나, 환가 또는 처분기간 지정 등으로 담보물 처분이 필요한 경우</u>
<u><신설></u>	<u>부칙 (11)</u> <u>이 규정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u>